

## 4.3.26 강의평가운영규정

제정	2016. 01. 20.
개정	2016. 02. 18.
개정	2017. 10. 31.
개정	2018. 01. 25.
개정	2018. 03. 14.
개정	2019. 02. 01.
개정	2019. 08. 30.
개정	2020. 09. 04.
개정	2020. 09. 28.
개정	2020. 11. 26.
개정	2021. 02. 16.
개정	2021. 03. 25.
개정	2022. 10. 04.
개정	2022. 12. 07.
개정	2023. 06. 08.
개정	2024. 04. 01.
개정	2024. 07.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 교원의 강의평가 시행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교원 인사 및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삭제 <2017.10.31>

② 삭제 <2017.10.31>

③ ‘교수평점’은 한 교원이 해당 학기에 담당한 모든 강좌의 강의평가 총점을 평가에 참여한 총 학생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④ ‘강의평점’은 특정 과목 특정 분반의 강의평가 점수를 평가에 참여한 총 학생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강의평가는 당해 정규학기에 개설된 전 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과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03.25.>

1. 현장실습, 사회봉사 등 외부 실습 과목
2. 대학원 과목
3. 초당인성교육 및 1/2이상 외부인사 초청 강연으로 구성된 과목
4. 전공교육과정심의위원회 및 교양교육위원회에서 강의평가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한 과목 <개정 2021.02.16.>
5. 팀티칭, 옴니버스 강좌 같이 여러 명의 교수자에 의해 운영되는 강좌 <신설 2024.07.23.>

제4조(평가시기 및 방법) ① 강의평가는 매학기 본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개강 후 5주가 경과한 시점(중간강의평가) 및 학기말(기말강의평가) 정해진 기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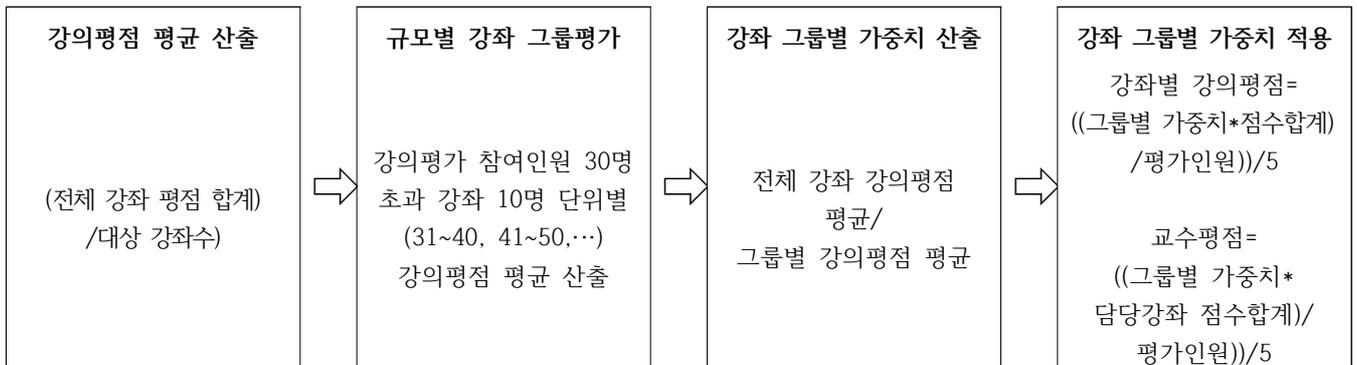
대해서는 불시에 오프라인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는 오프라인 강의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03.14>

- ② 학생의 성적열람은 중간 및 기말강의평가를 완료한 후에 가능하며, 강의평가 미완료 강좌의 경우 등급을 제외한 성적평가 항목별 점수 열람에 한하여 가능하다. 다만 전항에 의한 오프라인 강의평가를 시행한 경우에는 온라인강의평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3.14., 2019.02.01>
- ③ 강의평가 문항은 사전에 공지하며, 강의평가 참여 학생의 익명성을 반드시 보장한다.
- ④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강의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과목은 평가자의 비밀을 보장하여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유형 및 문항) ① 강의평가유형은 이론형, 실험·실습형, 온라인형, 학생중심형으로 분류한다. 단, 이론과 실습이 혼합된 형태의 강의는 실험·실습형으로 분류하며, 블렌디드 러닝(blended-learning) 및 플립트 러닝(flipped-learning) 형태의 강의는 이론형으로 분류한다. <개정 2022.10.04.>

- ② 강의평가는 선다형 5개~10개 문항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 학년도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후 부적절한 문항은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통계 표준식을 이용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 강의평가 참여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강좌의 경우 다음 절차를 적용하여 강의평가 총점에 가중치를 부여하되 가중치 적용 후 5점을 초과하는 점수는 5점으로 한다. <개정 2020.11.26.>, <개정 2024.04.01.>



- ② 강의평가 결과는 수강학생 평가점수들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10.31>
  1. 삭제 <2017.10.31>
  2. 삭제 <2017.10.31>
  3. 삭제 <2017.10.31>
- ③ 공동강의 교과목의 평가는 모든 참여교원에게 동일한 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 ④ 본 규정의 모든 강의평가 결과는 5점 만점으로 적용하며, 각 단계별 0.5점 단위로 총 10개 단계로 평가한다. <신설 2017.10.31.>, <개정 2024.04.01.>
- ⑤ 강의평가 대상 강좌가 없는 교원의 교수평점은 소속학과 강의평가대상 전체 강좌의 강의평가 총점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0.11.26.>

제6조의 2(강의평가결과 분석) ① 강의평가결과는 강의개선위원회에서 강의평가결과 분석 보고서를 심의 후 행·재정적 조치방안을 각 학과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강의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8.03.14., 개정

2020.09.28.>

② 삭제 <2020.09.28.>

제7조(평가결과 확인) ① 학생들의 응답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강의평가 결과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수에게 담당 강의 별 강의평점과 문항별 점수를 제시하고, 학과(부) 별, 직위별(전임과 비전임) 순위와 백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신설 2000.06.08.> <삭제 2024.07.23.>

제8조(평가결과 활용 및 공개) ① 교수평점은 학기말 강의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10.31.>

② 강의평가 결과는 교원업적평가, 교원 재임용 및 승진, 강사 및 겸임 또는 초빙교원 재임용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재임용 및 승진 심사 시 당해 학기의 중간 강의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9.08.30>

③ 매학기 수강신청 시 수강신청개설 과목표에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이 최근에 담당한 동일과목에 대한 과목평점을 공개하여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여러 개의 분반을 담당할 경우 담당 분반 전체 평균점수를 공개한다. <개정 2018.03.14>

④ 교수평점이 우수한 교원 및 강사에게는 본교에서 정한 별도의 품의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⑤ 강의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수법 연수 또는 강의클리닉 코스를 이수하여야 하고 강의 개선계획서를 소정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25., 2021.03.25.>

1. 교수평점이 4.0 미만인 경우 <개정 2016.02.18>

2. 삭제 <2018.03.14>

3. 삭제 <2021.03.25.>

4. 중간 강의평가 결과 즉각적인 수업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18.01.25.>

5. 강의평점 4.0 미만 강좌가 2개 이상인 경우 <신설 2021.03.25.>

⑥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치사항 미이행 교원에 대하여 총장은 책임학점 이하로 최대 6학점까지 다음 학기 강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조치사항 미이행 교원에 대하여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개정 2016.02.18., 2018.01.25., 2018.03.14., 2020.09.04.>

⑦ 강의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교원은 총장이 학생교육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으로 교원인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09.04., 개정 2021.03.25., 2022.12.07.>

1. 재임용기간 중 1/2이상 교수평점이 4.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2개 학기 연속 교수평점이 4.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3. 재임용기간 중 1/2이상 교수평점이 전체 교원(전임/겸·초빙/강사 구분)별 하위 1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4. 2개 학기 연속 교수평점이 전체 교원(전임/겸·초빙/강사 구분)별 하위 1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5.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교수평점이 4.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6.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교수평점이 전체 교원(전임/겸·초빙/강사 구분)별 하위 1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전 호 신설 2022.12.07.>

제9조(평가결과 보고 및 비밀 유지) ① 교무처장은 매학기 실시한 강의평가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본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강의평가 결과 외 개별 교원의 강의평가 결과와 평가관련 자료는 임의로

공개하지 않으며, 해당 교원 및 업무관련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 ③ 교무처장은 학부장 및 학과장에게 해당학과 소속 비전임 교원의 강의평가 결과를 강의평가 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의개선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9.28.>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9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별첨1]의 과목 유형별 강의평가 문항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첨1]의 과목 유형별 강의평가 문항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평가결과 활용 및 공개)제7항 제3호 내지 제6호는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6월 0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일) 이 규정은 2024년 07월 23일에 개정한다

[별첨1] 과목 유형별 강의평가 문항 <신설 2018.03.14.><개정 2020.09.28., 2020.11.26., 2022.10.04., 2024.04.01.>

<이론형>

번호	평가 문항	평가시기	
		중간	기말
1	담당교수는 수강과목의 강의내용이나 진행방식, 성적평가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	
2	강의내용 및 진행속도는 학생의 학습능력과 이해수준에 적합하게 구성·진행되었다.	●	
3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적합한 강의교재 및 참고자료, 기타 학습자료가 제공되었다.	●	
4	담당교수는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문의에 즉시 답변하는 등 의사소통에 적극적이었다.	●	●
5	담당교수는 수업시간을 잘 지키고 학생상황을 고려하여 휴·보강을 진행하였다.	●	●
6	담당교수는 출결처리를 엄정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였다.		●
7	과제물 및 시험은 공정하게 평가되고 학생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다.		●
8	이 강의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이론지식이 향상되었다.		●
9	이 강의에서 좋았던 점을 기술바랍니다.	●	●
10	이 강의에서 개선할 점을 기술바랍니다.	●	●

<실험·실습형>

번호	평가 문항	평가시기	
		중간	기말
1	담당교수는 수강과목의 강의내용이나 진행방식, 성적평가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	
2	실습내용 및 진행속도는 학생의 실습능력과 이해수준에 적합하게 구성·진행되었다.	●	
3	실험·실습장비는 실험·실습내용에 맞춰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다.	●	
4	담당교수는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문의에 즉시 답변하는 등 의사소통에 적극적이었다.	●	●
5	담당교수는 수업시간을 잘 지키고 학생상황을 고려하여 휴·보강을 진행하였다.	●	●
6	담당교수는 출결처리를 엄정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였다.		●
7	과제물 및 시험은 공정하게 평가되고 학생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다.		●
8	이 강의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실무능력이 향상되었다.		●
9	이 강의에서 좋았던 점을 기술바랍니다.	●	●
10	이 강의에서 개선할 점을 기술바랍니다.	●	●

### <학생중심형>

번호	평가 문항	평가시기	
		중간	기말
1	담당교수는 수강과목의 강의내용이나 진행방식, 성적평가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	
2	담당교수는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업 중 적절한 조언과 방향제시를 하였다.	●	
3	새롭게 적용되는 수업방식이 학습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4	담당교수는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문의에 즉시 답변하는 등 의사소통에 적극적이었다.	●	●
5	담당교수는 수업시간을 잘 지키고 학생상황을 고려하여 휴·보강을 진행하였다.	●	●
6	담당교수는 출결처리를 엄정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였다.		●
7	과제물 및 시험은 공정하게 평가되고 학생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다.		●
8	이 강의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향상되었다.		●
9	이 강의에서 좋았던 점을 기술바랍니다.	●	●
10	이 강의에서 개선할 점을 기술바랍니다.	●	●

### <온라인형>

번호	평가 문항	평가시기	
		중간	기말
1	담당교수는 수강과목의 강의내용이나 진행방식, 성적평가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	
2	강의콘텐츠는 수업시간에 맞춰 적절하게 게시되었다.	●	
3	온라인 강의 내용 및 진행 속도는 학생의 학습능력과 이해수준에 적합하게 구성·진행되었다.	●	
4	담당교수는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문의에 즉시 답변하는 등 의사소통에 적극적이었다.	●	●
5	강의콘텐츠의 화질 및 음향처리 등에 문제가 없어 학습하는데 편리하였다.	●	●
6	담당교수는 출결처리를 엄정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였다.		●
7	과제물 및 시험은 공정하게 평가되고 학생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다.		●
8	이 강의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향상되었다.		●
9	이 강의에서 좋았던 점을 기술바랍니다.	●	●
10	이 강의에서 개선할 점을 기술바랍니다.	●	●